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2023.12.18.)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 과]	1
---	-------------------------	----------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2.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2. 18.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고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을 반영하여 면 단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원 대비 초과정원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세종사무소 근무, 인구증가 업무, 창포원 국가정원,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신규·핵심 분야 인력을 증원하여 재배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 조정함(안 별표 4)
 - 1) 총정원: 변동없음
 - 2) 부단체장 직급 상향: 4급 감1, 3급 증1
 - 3) 기능인력 재배치, 현원 대비 초과정원 정비에 따른 정원 조정
 - 가) 본청: 6급 이하 증6

나) 사업소: 6급 이하 증1

다) 면: 6급 이하 감7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4조·제29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6.~12. 11.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인구 5만 이상 군의 부군수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군 정원조례를 변경함과 동시에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따라 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농업기술 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으로 정원 증원 1명 건의	- 2020년도 농산물 안전분석실 정원 2명 증원하였음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초기로 농업기술 센터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분석 건수에 따라 증원 검토 필요	미반영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인구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구(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